탄 원 서

피고인	최은순
사건번호	2025고합1733
관련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회사 자금 관련 혐의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양평 공흥지구 사건에서 최은순 피고인에게 제기된 의혹은 개발부담금 감면과 관련한 청탁·배임의 공모, 그리고 회사의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별도 문제로 나뉩니다. 공공의 부담금을 부당하게 줄이고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마땅히 엄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피해 재산과 행위구조를 가진 문제들이 한 사람의 가족관계나 사업상 지위를 이유로 하나의 책임으로 뭉뚱그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고인을 조건 없이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생략될 수 없는 개별 심리의 원칙을 지켜달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드립니다.

특검의 주장과 피고인 측의 반박은 아직 다투어지는 사항이며, 아래의 논의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료의 한계를 먼저 밝히는 것은 불리한 내용을 감추지 않고, 법원이 실제로 확인한 증거만으로 결론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정직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와 신탁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피고인의 개인적 청탁과 구별하여 주십시오

양평군의회 회의록상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 설명되어 있고,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두 차례의 고지전 심사청구 과정에서 개시시점 지가와 종료시점 지가, 일부 개발비용과 사업개시일의 평가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절차가 통상적인 법적 이의신청이었는지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의해 왜곡된 것이었는지는 중요합니다. 다만 법적인 신청권의 행사와 이를 넘어서는 허위자료 제출 또는 부당한 압박은 행위 내용과 당시 인식이 다르므로 하나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최은순 피고인 등이 당시 군수에게 감면을 청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측은 부당한 청탁을 부인합니다. 따라서 요청서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실제 문서 작성자, 요청 내용의 전달자, 김선교 피고인에게 접촉한 사람, 대화와 지시의 연결이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탁사 명의의 신청서가 있다고 해서 최은순 피고인의 개인적인 관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작성·전달 단계마다 최은순 피고인이 위법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당시 관련자들의 대화와 연락 기록이 존재한다면 어떤 수치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피고인이 전달받았는지, 그 뒤에도 특정한 계산을 고집하거나 결론을 바꾸도록 요구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이 경우 행정적 이해관계가 형사상의 고의와

공모로 이어지는지 비로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이익을 얻는 지위와 공동정범의 책임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특검은 시행사 ESI&D가 개발부담금 문제로 약 22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이 사업과 경제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그 사정은 동기와 관여 가능성을 살피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익을 얻는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 개인이 담당 공무원의 임무위배를 인식하고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는 바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년 9월 10일 선고 2009도5630 판결은 배임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 또는 밀접한 관련 제3자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실행자의 배임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교사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의 사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법리는 피고인이 정말로 수익자·관련 제3자의 지위에서 문제 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직접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된 것인지 구분한 뒤에 적용해야 합니다. 판례의 문구만으로 공소사실을 배척할 수는 없고, 공모와 역할분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사업의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와 별개로, 최은순 피고인이 공무원의 임무위반을 알고 어떤 부탁을 했는지, 관련 자료의 허위성을 인지했는지, 지시와 처분 사이의 어느 단계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 구체적 가담이 증명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증명되지 않는 부분을 가족관계나 회사 전체의 행위만으로 메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급여 지급과 법인카드는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공개 공판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지역 언론인 출신 인사에게 로비 대가로 회사 자금 약 2억 4,300만 원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됐으며 법인카드 약 594만 원이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해당 인사가 실제로 회사에서 일했고 급여는 업무 대가라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두 주장은 모두 실제 회사 기록과 맞추어 보아야 할 주장이지, 이 탄원인이 참과 거짓을 확정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급여는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 여부, 실제 근무와 업무 결과물, 매달 수행한 업무, 급여액의 상당성, 공무원 접촉 업무의 내용, 급여를 승인한 사람과 승인 당시의 설명을 기간별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업무가 있었다면 전액을 허위 급여라고 볼 수 있는지 따져볼 이유가 생기지만, 일부 업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지급액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업무가 없이 청탁 대가를 회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증명된다면 회사 재산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판단돼야 합니다.

법인카드 약 594만 원은 급여와 달리 거래 시점과 거래 목적이 각각 특정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실제 사용한 사람, 가맹점과 참석자, 결제 내용, 영수증, 사전승인과 사후정산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구별해 주십시오. 회사 카드의 교부 자체가 모든 개별 결제에 대한 형사상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사적 사용을 알면서 묵인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역시 그 내용을 심리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의 적용 여부와 업무상배임의 적용 여부도 공소사실을 확정한 뒤 각각 판단해 주십시오. 횡령은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위배·재산상 손해라는 다른 요소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실제로 어느 죄명이 적용되었는지 공소장 확인 전에 제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불리한 개발비용 증언도 독립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2026년 4월 20일 공판에서는 개발비용 검토 관계자가 시행사의 비용 산정에 큰 차이가 있었음을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증언은 시행사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자료를 직접 만든 사람,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 사람, 오류를 최종 처분에 남도록 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은순 피고인에게 개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계산자료의 허위 가능성을 실제로 알고도 제출을 지시하거나 유지하도록 한 정황이 증명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명의상 가족 또는 사업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임직원의 허위 인식까지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검찰의 입증을 불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의에 관한 판단을 실제 자료에 충실하게 하자는 요청입니다.

한 사람의 법적 책임은 그 사람이 한 행위의 경계 안에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재판장님, 최은순 피고인의 이름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올 수 있지만, 법정에서 판단해야 할 것은 누구의 가족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무슨 말을 했고 무엇을 알고 어떤 자금을 승인했는지라고 믿습니다. 개발부담금 청탁과 배임 가담, 급여와 카드 사용을 각각 심리하시고, 피고인의 가담과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 공소사실에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그 범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주시되 다른 사람의 행위나 막연한 의심까지 떠안게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제 탄원이 완벽한 사실관계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공개자료의 한계를 인정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법정에 제출된 구체적인 증거가 한 사람의 권리와 책임을 정확히 구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 _____월 _____일

탄원인 성명: _____ (본인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_____ 연락처: _____

주소: _____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귀중